

의안번호	제471호
의 결 연 월 일	2010년 3월 일 (제288회)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 출 자	충 청 북 도 지 사
제출연월일	2010년 3월 2일

법무통계담당관 심사를 마침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471
------------	-----

제출연월일 : 2010년 3월 2일
제 출 자 : 충 청 북 도 지 사

1. 제안사유

- 소방 3교대 인력 확충과 특별행정기관 업무이관 및 신규 행정수요에 대비하기 위한 최소한의 정원 증원과 일부 기능쇠퇴분야 정원감축 등 정원의 총수를 조정하고,
- 기능직 처우개선을 위한 직급별 정원 책정기준을 조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① 정원의 총수 조정 : 2,792명 → 2,937명 (증145명) (안 제2조)
 - 집행기관의 정원 : 1,437 → 1,447명 (증10명)
 - 소방본부 및 소방서에 두는 소방공무원의 정원 : 1,243→1,378명(증135명)
※ 교육공무원, 의회사무기구는 변동 없음.

② 직급별 정원 책정기준 조정 (별표2)

- 기능직 공무원

구 分	총정원	5급	6급	7급	8급	9급	10급
현행	253명	1%이내	6%이내	16%이내	19%이내	32%이내	26%이상
조정	247명	1%이내	7%이내	22%이내	22%이내	30%이내	18%이상
증감	△6명	변동없음	+1%	+6%	+3%	△2%	△8%

※ 일반직, 연구·지도직, 소방직, 별정직 변동사항 없음.

③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조정 (별표3)

- 총 계 2,792명 → 2,937명 (증145명)
 - 일반직 1,070명 → 1,086명 (증 16명)
 - 5급이하 998명 → 1,014명 (증 16명)
 - 소방직 1,243명 → 1,378명 (증135명)
 - 소방령 이하 1,233명 → 1,368명 (증135명)
 - 기능직 253명 → 247명 (감 6명)

※ 연구직, 지도직, 별정직, 교육공무원은 변경사항 없음.

3. 의안전문 : 불임

4. 신·구조문대비표 : 불임

5. 관계법령 발췌 : 불임

충청북도 조례 제 호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2,792명”을 “2,937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1,437명”을 “1,447명”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1,243명”을 “1,378”명으로 한다.

별표2 중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기능직공무원

구 분	5급	6급	7급	8급	9급	10급
비 율	1%이내	7%이내	22%이내	22%이내	30%이내	18%이상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규정) 이 조례 시행으로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초과 현원 해소시까지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별표 3]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표 (제4조 관련)

직급별 \ 기관별	총 계	본 청	의 회	직속기관	사 업 소
총 계	2,937		-		
정 무 직 계	1	1			
도지사	1	1			
일 반 직 계	1,086		-		
2~3급	1		1		
3급	9	8		1	
3~4급	1	1			
4급	61	44	7	4	6
5급이하소계	1,014		-		
별 정 직 계	21		-		
1급 상당	1	1			
5급상당이하소계	20		-		
연 구 직 계	138		-		
연 구 관	22			19	3
연 구 사	116		-		
지 도 직 계	24		-		
지 도 관	6			6	
지 도 사	18		-		
소 방 직 계	1,378		-		
소 방 정	10	2		8	
소방령이하	1,368		-		
교육공무원계	42		-		
총 장	1			1	
교수 · 부교수 · 조교수 · 전 임강사	30			30	
조 교	11		-		
기 능 직 계	247		-		

※ 복수별정은 별정에 포함.

신·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정원의 총수) 충청북도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총수는 <u>2,792명</u>으로 하며, 다음 각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집행기관의 정원 : <u>1,437명</u> 2. 소방본부 및 소방서에 두는 소방 공무원의 정원 : <u>1,243명</u> 3. ~ 4. (생략) 	<p>제2조(정원의 총수) 충청북도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총수는 <u>2,937명</u>으로 하며, 다음 각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집행기관의 정원 : <u>1,447명</u> 2. 소방본부 및 소방서에 두는 소방 공무원의 정원 : <u>1,378명</u> 3. ~ 4. (현행과 같음)

관 계 법령 발췌

【지방자치법】

- 제112조 (행정기구와 공무원)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을 둔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인건비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⑥ (생략)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 제29조 (직급별 정원) 지방자치단체의 지방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합리적인 직급체계를 이룰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제30조 (정원의 규정) ①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1. 집행기관의 정원(제2호와 제3호에 따른 공무원의 정원은 제외한다)
2. 본청·소방학교와 소방서에 두는 소방공무원의 정원
3. 지방공립대학에 두는 교육공무원의 정원
4.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5. 합의제행정기관의 정원
②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제1항에 따른 정원의 총수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시·도의 5급 이하(시·군·구는 6급 이하) 직급별 정원은 조례로 그 총수만 정하고 그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의 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③~⑤(생략)